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08-1035호, 2008.12.31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09-0595호, 2009. 9.29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0-0354호, 2010. 8.27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1-0057호, 2011. 3.10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1-0223호, 2011. 7.08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3-0196호, 2013. 6.1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심사”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판품조사”란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조자”란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계를 갖추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제조(생산, 조립, 가공)하는 자를 말한

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세부범위)**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규칙 제3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규칙 제3조제3항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 제2장 안전인증

**제4조(안전인증의 재시험)** ①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확인되었으나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재시험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시료를 첨부하여 재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인증번호 사전 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한자가 원할 경우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번호 사전부여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절차 등은 안전인증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안전인증의 철회)**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시험이 진행된 시험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을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공장심사원)**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ISO 9000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9조(공장심사 생략)**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시험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조제1항 별표2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동일분류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2.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규칙 제3조제1항 별표2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동일분류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10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

전기준 적합성을 확인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서류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용품안전인증 서류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당해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⑤ 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두개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의 제품으로 설계된 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⑥ 옵션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

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장착한 상태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제11조(안전기준의 시험면제)** ①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IECEE/CB)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로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제2호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의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인정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 또는 문서로 국내에서 발행한 CB인증서를 인정할 것을 보장하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일 것
2. CB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3. CB인증서 발급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② CB인증서 제출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부품에 대하여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제11조의2(제조사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자 시험결과로 안전인증의 제품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자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

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OLAS, IECCE 시험소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용품 제조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심사기준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0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
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시 별표 10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중 부적합시 판정기준이 개선명령인 항목에서 부적합



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

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제13항은 공장심사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설비는 당해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3에 규정된 설비와 별표 4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된 설비 이외에 별표 4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은 당해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인증의 변경)**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부 또는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의 분류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과 함께 양수받아야 한다.

**제14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을 변경요청 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제조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제조업자가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②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계 후 당해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수 후 당해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서

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안전인증의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체에 대한 시·도별 안전인증현황을 매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시판품조사결과 등으로 인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인증표시 사용금지·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5조(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사전 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원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사전부여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절차 등은 안전인증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국내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자율안전확인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당해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⑤ 규칙 제3조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두개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의 제품으로 설계된 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⑥ 옵션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장착한 상태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제17조(자율안전확인시험면제)** ①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IECEE/CB)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인정할 실적이 있거나 계약 또는 문서로 국내에서 발행한 CB인증서를 인정할 것을 보장하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일 것
2. CB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3. CB인증서 발급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② CB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제17조의2(제조사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자 시험결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제품시험을 면제 받

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자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OLAS, IECCE 시험소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용품 제조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전지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지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규칙 동조 동항 제3호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

을 것

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제18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을 하여 발급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신고모델에 대한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자율안전확인증명서의 신고번호는 해당 신고모델에 대한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로 한다.

③ 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기용품을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신고를 할 경우 동일모델 확인신고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3의2의 검사항목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업체에 대한 시·도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현황을 매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시판품조사결과 등으로 인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제18조의3(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제조자·수입업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시험자”)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시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IECEE/CB)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CB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 CB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⑤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국내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국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시험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해 시험기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 제5장 자체검사

**제19조(자체검사규정)**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 등에 대한 자체검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등의 자체검사 규정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검사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원자재검사는 당해 전기용품의 주요부품 검사항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적합한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2. 공정검사는 최소한 별표 4 제1호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의 품목에 대하여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품검사는 제품별로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검사항목별 및 검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주요재질 또는 부품·설계·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당해 제품의 모델에 대하여 전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별표 4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장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제21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 영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면제 또는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물품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물품에 대한 이행확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장 사후관리

**제23조(안전기준 변경통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에게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회의에 불참한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4조(시판품조사)**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의 자격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영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시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시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 별표 2의 제품 분류별로 가장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 시험시 제조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할 시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중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가 6월내에 제작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접수

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정기검사대상 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시 규칙 제3조 별표2에 의한 제품 분류를 달리하는 제품이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조 및 제조·검사설비가 유사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 중 어느 하나의 제품만을 채취 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자체검사 실적 우수업체 판단기준)**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한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모두 적합한 업체를 말한다.

**제26조(안전관리교육)**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시판품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조치를 받은

전기용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및 부적합내용 등을 협회에 매월 통보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체는 대표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조(안전인증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교육이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한 확인)**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검사 부적합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제조업체 협의회구성)** ① 협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품목별 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전기제품의 생산보급을 위한 공동연구

2. 원자재 공동구입·최신설비의 공동발주
3.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도입·보급에 관한 사업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판품조사 지원

## 제8장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제29조(안전인증의 표시등·자율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등)**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또는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규칙 제25조의6 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표시, 별표 6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표시등은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을 한 경우에는 제품 통관전에 하여야 한다.

**제31조(표시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의 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으로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번호는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을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표지는 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지는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 급자적합성확인등의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당해제품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구조상 당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
3.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선류는 다음 각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600V고무절연전선, 고무코오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오 드 이외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

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전구류는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전자파 표시) 삭제

## 제9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33조(세부안전적용기준) 규칙 제2조 별표1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기준 적용은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에 따른다.

제34조(세부범위) 규칙 제2조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별표 9에 따른다.

제35조(동등 특성이상의 세부범위) ① 제조사가 같거나 또는 다른 경우 전기적인 특성 및 절연등급이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9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②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등의 구조·모양, 전기회로 등은 동일하고 단순히 부품을 제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멀티형 냉방기의 세부범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중 멀티형 냉방기의 경우 핵심부품인 압축기(실외기)의 변동 없이 실외기 최대용량의 범위 내에서 법 제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법 제5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용품(실

내기)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 제10장 행정처분

제37조(행정처분의 개선기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특성상 설계변경 또는 전기용품의 시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유와 개선 예정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장 전기용품기술위원회

제38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전기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전기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단체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비율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거나 위원회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전기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전기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2010. 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호텔 납품용 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 전선 및 전원 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 <sup>2</sup>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 <sup>2</sup>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 <sup>2</sup> 이상 6mm <sup>2</sup>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④ 코드세트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⑤ 리모트컨트롤스위치 ⑥ 시간지연스위치 ⑦ 조광기
	나.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① 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k $\Omega$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p>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math>\mu</math>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을 말한다)</p>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p>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p> <p>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을 말한다)</p> <p>③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p> <p>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p>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p>가. 퓨즈 및 퓨즈홀더</p> <p>나. 기기보호용 차단기</p>	<p>① 퓨즈 및 퓨즈홀더(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통형인 것에 한한다)</p> <p>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math>^{\circ}</math>C 초과 280<math>^{\circ}</math>C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① 기기보호용 차단기</p> <p>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검용보호 겸용</p>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인 것을 말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① 전기건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저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바. 모발관리기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③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같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젓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방석 ② 전기요 ③ 전기매트 ④ 전기카펫 ⑤ 전기장판 ⑥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타. 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파. 전기냉장·냉동기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하. 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가정용 전동채봉기	① 가정용 전동채봉기
	너. 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더.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을 말한다)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러. 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 ② 전열보드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머. 전기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버. 냉방기 및 제습기	① 냉방기 ② 제습기 비고)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을 말한다.
	서.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 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 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은 제외한다.
	어. 전기가열기기	① 납땀인두 ② 납땀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땀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저. 사우나기기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커. 기포발생기기	① 기포발생기
	터.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퍼. 전기욕조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허.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고. 자동판매기	① 자동판매기
	노. 팬, 레인지후드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도. 화장실용 전기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로. 가습기	① 가습기
	모. 전기분무기	① 전기분무기
	보. 전기소독기	① 전기소독기(살균등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소. 음식물처리기	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한다)
	오.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조. 그 밖에 가목부터 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8. 전동공구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다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기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무정전 전원장치	①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코팅기	① 코팅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젠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⑦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주방용전동기기
	나. 전기담요 및 매트	① 전기방석 ② 전기요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③ 전기매트 ④ 전기카펫 ⑤ 전기장판
	다.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라.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 전선 및 전원 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①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기	① 과일껍질깎기
	나. 감자 탈피기	① 감자탈피기
	다. 전기정미기	① 전기정미기
	라. 전기 빵 자르개	① 전기 빵 자르개
	마. 전기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② 초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바. 애완동물 목욕기	① 애완동물목욕기
	사. 이미용기기	① 전기머리손질기 ② 두피모발기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③ 샴푸기기 ④ 모발가습기 ⑤ 손톱정리기 ⑥ 전기면도기 ⑦ 전기이발기 ⑧ 안면사우나기
	아. 전기 주류 숙성기	① 전기주류숙성기
	자. 전기시계	① 전기시계
	차.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타. 컴프레서	① 컴프레서
	파. 전기온수매트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하. 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거. 전기분수기	① 전기분수기
	너. 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더. 해충퇴치기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러. 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머. 착유기	① 착유기
	버. 서비스기기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④ 동전교환기
	서.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어.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저.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처. 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구 ② 운전시물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커. 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
	터. 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피. 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허. 보풀 제거기	① 보풀 제거기
	고. 산소이온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노.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도. 전기세척기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로.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 전기작동 도어록	① 전기작동 도어록
	보. 삭제	삭제
	소. 삭제	삭제
	오. 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조. 전기차충전기	①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초. 에너지저장장치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 그 밖에 가목부터	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① 영상모니터
	다. 편집기	① 편집기
	라. 디스크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마. 앰프	① 앰프 ② 앰프내장형 스피커
	바.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사.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아. 비디오게임기구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 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자. TV영상프로젝터	① TV영상프로젝터
	차.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
	카. 음성 및 영상분배기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타. 영상전송기	① 영상전송기
	파.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하.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바. 재단기	① 재단기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0. 정보·통신·사무기기	사. 제분기	① 제분기
	아. 실물화상기	① 실물화상기
	자. 입체영상기	① 입체영상기
	차.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에 한함)	① 코드없는 전화기(1.7GHz 또는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②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③ 다기능 전화기(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④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⑤ 공중전화기 ⑥ 영상전화기
	카. 팩시밀리기기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①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파.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하.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①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단말기기 (금융단말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너.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더. 디지털TV	① 디지털TV(스마트TV, IPTV 등)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러.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①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
	머. 원격제어방송기기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머. 그 밖에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나. 백열등기구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 등
	다.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라. 기타 조명기구	①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④ 할로젠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마. 기타 램프	① 백열전구 ② LED모듈(램프) ③ 할로젠전구(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전지	①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나.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별표 2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 전선 및 전원 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7. 전기기기	대상 없음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①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나. 비디오카메라	① 비디오카메라
	다. 튜너	① 튜너
	라. 라디오 수신기	① 라디오 수신기
	마. 리시버	① 리시버
	바. 음성기록계	① 음성기록계
	사. 음성플레이어	① 음성플레이어
	아. 위성방송수신기	① 위성방송수신기
	자. 비디오폰	① 비디오폰
	차. 음질조절기	① 음질조절기
	카. 신호변환장치	① AD/DA 변환장치
	타. 컴프레서 게이트	① 컴프레서 게이트
	파. 전자시계	① 전자시계
	하. CCTV 카메라	① CCTV 카메라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너. 영상기록계	① 영상기록계
	더. A/V신호수신기	① A/V신호수신기
	러. CATV방송수신기	① CATV방송수신기
	머. 턴테이블	① 턴테이블
	버. 모듈레이터	① 모듈레이터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스캐너	①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① 지폐계수기
	다. 전자저울	① 전자저울
	라. 금전등록기	① 금전등록기
	마. 어학실습기	① 어학실습기
	바. 전자칠판 및 보드	① 전자칠판 및 보드
	사. 동전계수기	① 동전계수기
	아. 전동타자기	① 전동타자기
	자. 전기소자기	① 전기소자기
	차. 교통카드 충전기	① 교통카드 충전기
	카. 번호표 발행기	① 번호표 발행기
	타.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 추어 무선국용 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파.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①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 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 포함)
하. 인터넷멀티미디어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
	더. A/D 및 D/A 신호변환기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
	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11. 조명기기	대상없음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나. 충전용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전기햄머 ⑤ 전기잔디깎기 ⑥ 전기못총 ⑦ 기타 전동공구
	다.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	①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②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육상용,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동형 무선통신 기기	해상용) ③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라. 생활무선국용 무선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3]

## 검사설비(제12조 관련)

### 1. 전선 및 전원코드

분 류	검사설비명
가.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1)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0.01mm 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더블브리지 (4) 절연저항시험기 (5) 난연성시험기 (6) 내전압시험기 (7) 인장시험기 (8) 저울 (9) 항온조(고무절연재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분 류	검사설비명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mm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6) 온도기록계 또는 열전대온도계 (7) 전압조정기 (8) 절연저항계 (9) 내전압 시험기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구 분	검사설비명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2) 내전압시험기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구 분	검사설비명
가.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절연저항기 (4) 내전압시험기 (5)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6)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7)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8)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 전압, 전류, 전력계는 일반스위치, 전자스위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에 한한다.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구 분	검사설비명
가. 퓨즈 및 퓨즈홀더 나. 전기기기용 차단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3kVA이상인 것으로 300V까지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는 것) (4)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6)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7) 절연저항계 (8) 절연내력시험장치 (9) 퓨즈용단시험기(퓨즈에 한한다)

## 6. 절연변압기

구 분	검사설비명
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6) 전압조정기 (7) 절연저항계 (8) 내전압 시험기

## 7. 전기기기

구 분	검사설비명
공통설비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6)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7) 전압조정기 (8) 내전압시험기
1. 전기다리미 2. 전기탈수기 3. 식기세척기 4. 전기레인지, 주방용전열기구 5. 전기세탁기 6. 전기 건조기 7. 전기냉장(동) 기기 8. 전자레인지 9. 전열기기 10. 전기맞사지기	(1) 3점 지지대 (1) Long test pin (1) 온수 공급 장치 (1) Long test pin (2) 부하시험기 (3) 1.8kg 시험용기 (1) 시험용 천 (2) 온수 공급 장치 (1) 표면온도측정기 (1) 냉매 측정기 (1) 고압 probe (2) 오실로스코프 (1) 5kg 추 (1) 90kg 부하

## 8. 전동공구

구 분	검사설비명
가. 전동공구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 0.5급 이상)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 (5)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 (6)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7) 전압조정기 (8) 내전압 시험기

## 9.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명	검사설비명
가. 복사기 나. 직류전원장치 다. 무정전전원장치 라. 코팅기(라미네이터) 마. 그밖의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기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조정기 (4)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 (5) 전류계(정도가 0.6급 이상인 것 ) (6)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7)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8) 내전압시험기

## 10. 조명기구

구 분	검사설비명
가. 램프홀더(소켓)	(1)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2) 밀리옴메터 (3)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4) 절연저항계 (5) 내전압시험기
나. 일반조명기구	(1)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2)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3) 절연저항계 (4) 내전압시험기 (5) 누설전류계 (6) 전압조정기(최대 500V) (7) 타이머(1/100s) (8)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바. 안정기	(1) 전압조정기 (2)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3) 절연저항계 (4) 내전압시험기 (5)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6) 열전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1) 절연저항계 (2) 내전압시험기 (3)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4)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5) 전력계, 전류계(정도가 0.5급이상인 것)

[별표 3의2]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제18조 관련)

제 품 분 류		검 사 항 목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 표시
		(2) 구조
		(3) 단자(종류)
		(4) 부품
나. 절연변압기		(1) 표시(허용공차 포함)
		(2) 온도상승(사용률)
		(3) 부품
다. 전기기기류		(1) 표시
		(2) 입력 및 전류
		(3) 구조검사(부품)
라.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 표시
		(2) 구조검사(부품)
마. 정보·통신·사무기기		(1) 표시
		(2) 입력 및 전류
		(3) 구조검사(부품)
바. 조명기기	형광램프용스타터	(1) 표시
		(2) 치수
	백열등기구	(1) 표시
		(2) 구조검사
	방전램프	(1) 표시
		(2) 베이스(치수)
		(3) 광학적 특성
	기타램프(백열전구)	(1) 표시
		(2) 치수
		(3) 초특성



[별표 4]

## 자체검사(제20조 관련)

### 1. 공정검사

제 품 분 류	검 사 항 목
가. 전선 및 전원 코드	(1) 스파크테스트(전선류) (2) 내전압시험 (3) 외관검사 (4) 기능(운전)시험 (5) 표시사항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정전용량시험(커패시터) (2) 내전압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바. 절연변압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제 품 분 류	검 사 항 목
사. 전기기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압력조정장치시험(전기압력솔에 한함) (4) 압력안전장치시험(전기압력솔에 한함) (5) 외관검사 (6) 표시사항
아. 전동공구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자. 정보·통신·사무기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차. 조명기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비고 :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는 샘플링 검사 할 수 있다.

- 1) 전원코드 세트,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소켓류
- 2)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3)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2. 제품검사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가. 전선 및 전원코드	(1) 재료 및 구조		○
	(2) 물리적 특성		○
	(3) 전기적 특성	○	
	(4) 내연성		○
	(5) 표시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표시사항		○
	(2) 감전에 대한 보호	○	
	(3) 접지에 대한 보호		○
	(4) 단자 및 단자부		○
	(5) 구조		○
	(6) 고형물, 먼지와 물에 대한 보호 및 내습성		○
	(7) 절연저항 및 내전압	○	
	(8) 온도상승	○	
	(9) 내구성		○
	(10) 기계적 강도		○
	(11) 나사 통전부 및 접속부		○
	(12)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13) 절연재료의 내열, 내화, 내트래킹성		○
	(14) 내부식성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외관 및 치수		○
	(2) 절연저항	○	
	(3) 내전압	○	
	(4) 정전용량	○	
	(5) 유전정접 및 등가 직렬저항		○
	(6) 누설전류	○	
	(7) 임피던스		○
	(8) 인덕턴스와 자기공진 주파수		○
	(9) 외부 박 단자		○
	(10) 단자 강도		○
	(11) 납땜 내열성		○
	(12) 납땜성		○
	(13) 온도급변		○
	(14) 진동		○
	(15) 범프		○
	(16) 충격		○
	(17) 용기 기밀성		○
	(18) 내한성, 내열, 저기압, 내습, 내구성		○
	(19) 온도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		○
	(20) 저장(고온, 저온)		○
	(21) 썩지		○
	(22) 중방전 및 돌입전류		○
	(23) 방폭		○
	(24) 열 안전성		○
	(25) 부품 및 표시의 내용제성		○
	(26) 부착, 전단, 기관 구부림		○
	(27) 유전 흡수, 가속 내습성, 수동 가연성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28) 고 써지 전류, 전압 순시 과부하		○
	(29) 열 안전성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표시사항 및 구조		○
	(2) 치수		○
	(3) 감전에 대한 보호	○	
	(4) 어스 장치		○
	(5) 단자		○
	(6) 내열, 방수, 내습성		○
	(7) 절연저항 및 내전압	○	
	(8) 어스극의 동작		○
	(9) 온도상승	○	
	(10) 개폐용량		○
	(11) 플러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		○
	(12) 동작		○
	(13) 케이블의 접속		○
	(14) 기계적 강도		○
	(15) 내열성		○
	(16) 나사 통전부 및 접속부		○
	(17)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18) 절연재료의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9) 내부식성		○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1) 표시		○
	(2) 치수 및 구조		○
	(3) 전기적 특성	○	
바. 절연변압기	(1) 표시 및 사용설명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전기적 특성	○	
	(4) 입력전압 변동		○
	(5) 부하시 출력전압, 전류		○
	(6) 무부하 출력 전압		○
	(7) 단락회로 전압		○
	(8) 온도상승	○	
	(9) 단락회로 및 과부하 보호		○
	(10) 기계적 강도		○
	(11) 먼지, 고체물질 및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		○
	(12)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3) 내연성		○
	(14) 구조 및 부품		○
	(15) 내부배선		○
	(16)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
	(17) 외부 전선 접속용 단자		○
	(18) 접지접속		○
	(19) 나사 및 접속		○
	(20)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21) 절연재료의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22) 내부식성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사. 전기기기	(1) 표시 및 사용설명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
	(4) 입력 및 전류		○
	(5) 온도상승	○	
	(6) 운전시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
	(7) 내습성		○
	(8)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	
	(9) 변압기 관련회로의 과부하 보호		○
	(10) 이상운전	○	
	(11)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
	(12) 기계적강도		○
	(13) 구조		○
	(14) 내부배선		○
	(15) 부품		○
	(16) 전원접속과 외부 유연성코드		○
	(17) 외부 전선용 단자		○
	(18) 접지접속		○
	(19) 나사 및 접속		○
	(20)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2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22) 내 부식성		○
	(23)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	
	(24) 내구성		○
아. 전동공구	(1) 표시사항		○
	(2) 감전에 대한 보호	○	
	(3) 시동		○
	(4) 입력 및 전류		○
	(5) 온도상승	○	
	(6) 누설전류	○	
	(7) 전자과장해		○
	(8) 내습성		○
	(9)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0) 내구성		○
	(11) 이상운전	○	
	(12) 기계적 강도 및 기계적 위험		○
	(13) 구조 및 내부배선		○
	(14) 부품		○
	(15) 전원 접속과 외부 유연성 케이블 및 코드		○
	(16) 외부 전선용 단자 및 접지 접속		○
	(17) 나사 및 접속		○
	(18)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19)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20) 내 부식성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자. 정보·통신· 사무기기	(1) 부품적합검사		○
	(2) 전원인터페이스		○
	(3) 표시 및 취급설명서		○
	(4) 감전으로부터의 보호	○	
	(5) 동작전압 및 절연결정		○
	(6) 안전 초저전압회로 검사		○
	(7) 전류제한회로		○
	(8) 접지연속성 및 접지구조		○
	(9) 일차전원의 차단		○
	(10) 과전류 및 접지불량에 대한 보호	○	
	(11) 안전인터록 검사	○	
	(12) 절연거리 측정		○
	(13) 기기간의 상호접속		○
	(14) 제한전원 시험		○
	(15) 배선 및 접속에 관한 일반사항		○
	(16) 일차전원과의 접속		○
	(17) 배선단자에 관한 검사		○
	(18) 안전성 및 기계적 상해 위험		○
	(19) 기계적 강도 및 외력시험		○
	(20) 세부구조검사		○
	(21) 내화성 검사		○
	(22) 온도상승 시험	○	
	(23) 누설전류측정		○
	(24) 내전압 시험	○	
	(25) 이상상태 시험	○	
	(26) TNV 회로 및 절연		○
	(27) TNV 회로전압 및 절연		○
	(28) 사용자 및 서비스요원의 보호		○
	(29) 통신망으로부터 사용자 보호		○
	(30) 배선시스템의 과열방지		○
	(31) 전동기 이상상태 시험		○
	(32) 트랜스포머 과부하 시험		○
	(33) X선 방사시험	○	
	(34) 온도조절기 시험		○
	(35) 전화호출신호 시험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차. 부품	(1) 밀폐된 부품에 관한 시험		○
	(2) 접착제 노화성 시험		○
	(3) 부속서 A 난연성 시험 (항목별)		○
카. 조명기기 (램프소켓)	(1) 표시		○
	(2) 치수		○
	(3) 감전에 대한 보호	○	
	(4) 단자		○
	(5) 접지장치		○
	(6) 구조		○
	(7) 스위치달린 소켓		○
	(8) 내습성, 절연저항 및 내전압	○	
	(9) 기계적강도		○
	(10) 나사, 통전부 및 접속부		○
	(11)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
	(12) 정상동작		○
	(13) 내열성		○
	(14) 내과열성, 내화성 및 내트레킹성		○
	(15) 과도잔여스트레스 및 내식		○
	(16) 내구성		○
	(17) 진동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타. 형광등용 소켓 및 스타터소켓	(1) 표시		○
	(2) 감전 보호	○	
	(3) 단자		○
	(4) 구조		○
	(5) 먼지 및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
	(6) 절연저항 및 내전압	○	
	(7) 내구성		○
	(8) 기계적강도		○
	(9) 나사, 도전부 및 접속		○
	(10)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2) 과도 잔류 응력에 대한 내성 및 내부식성		○
파. 일반 조명기구	(1) 표시		○
	(2) 구조		○
	(3)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
	(4) 접지		○
	(5) 단자		○
	(6) 외부 및 내부 배선	○	
	(7)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
	(8)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	○	
	(9) 내진성 및 내습성		○
	(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2) 하강거리와 정렬		○
	(13) 초특성		○
	(14) 전환동작		○
	(15) 고온 동작		○
	(16) 전원 내장형 비상용 조명기구에 대한 전지 충전기		○
	(17) 비상 동작에 대한 시험정치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하.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방전램프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절연내력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안정기 가열		○
	(9) 고전압 임펄스시험		○
	(10) 고장조건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입력전류		○
	(17) 전류과형		○
	(18) 안정기설치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거. 램프용전자식 안정기 (방전램프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	○	
	(3) 단자		○
	(4) 보호접지를 위한 규정		○
	(5) 내습성과 절연	○	
	(6) 전기적강도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조건		○
	(9) 독립적 시동장치의 예열		○
	(10) 이그나이터의 진동전압		○
	(11) 기계적강도		○
	(12) 구조		○
	(1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4)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5)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6) 내부식성		○
	(17) 입력전류		○
	(18) 전류 과형		○
너.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형광등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	○	
	(3) 단자		○
	(4) 보호 접지를 위한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내전압	○	
	(7) 권선의 내열성		○
	(8) 안정기 가열		○
	(9) 고전압 충격과 시험		○
	(10) 고장조건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더.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형광등용)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예열조건		○
	(17) 램프전력 및 전류		○
	(18) 입력전류		○
	(19) 전류과형		○
러. 램프용전자식 안정기 (형광등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내전압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상태 조건		○
	(9) 관련부품의 보호		○
	(10) 이상상태 조건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도전부 및 접속부		○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시동		○
	(17) 동작조건		○
	(18) 입력전류		○
	(19) 전류과형		○
	(20) 내구성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머. 안정기내장형 램프	(1) 표시		○
	(2) 교환성		○
	(3) 감전보호	○	
	(4) 내습시험후 절연저항	○	
	(5) 내습시험후 내전압	○	
	(6) 기계적강도		○
	(7) 캡 온도상승		○
	(8) 내열성		○
	(9) 내화성 및 점화성		○
	(10) 고장상태 조건		○
	(11) 램프전력		○
	(12) 광속		○
	(13) 광속유지율		○
머.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용 포함)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절연내력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조건		○
	(9) 변압기의 과열		○
	(10) 비정상상태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출력전압과 전류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버.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용 포함)	(17) 전체 회로 전력		○
	(18) 회로 역률		○
	(19) 공급 전류		○
	(20) 가청주파수에서 임피던스		○
	(21) 순간 과전압		○
	(22) 이상운전		○
	(23) 내구성		○
서. 자기식네온 변압기	(1) 표시		○
	(2) 전기적 특성		○
	(3) 온도 상승	○	
	(4) 내구성		○
	(5) 보호 등급		○
	(6) 직렬 캐패시터 양단 전압		○
	(7) 내습성		○
	(8)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	
	(9) 구조		○
	(10) 도체 접속		○
어. 전자식네온 변압기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절연내력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조건		○
	(9) 변압기의 과열		○
	(10) 비정상상태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어. 전자식네온 변압기	(11) 구조		○
	(12)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
	(13) 보호 회로		○
	(14)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5)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레킹성		○
	(16) 내부식성		○
	(17) 무부하 정격 출력전압과 정격출력전류		○

[별표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제21조 관련)**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전기용품
2. 특수한 용도를 가진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용품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전기용품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전기용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용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용품

비고) 협회는 전기용품 안전인증등의 확인을 최소한의 수량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6]

### 기타 필요한 표시(제29조 관련)

1.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정격(전압, 전류, 주파수, 소비전력, 용량 등 제품정격을 나타내는 표시)
5. 제조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6.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8.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9.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비고 1. 제품에 표시된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품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할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는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안전적용기준(제33조 관련)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정격전압	(1) 300V/300V 인 것 (2) 300V/500V 인 것 (3) 450V/750V 인 것 (4)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선심의 수	(1) 단심인 것 (2) 2심이상인 것
		단면적 또는 직경	(1) 6mm <sup>2</sup> 이하인 것 (2) 6mm <sup>2</sup> 초과 35mm <sup>2</sup> 이하인 것 (3) 35mm <sup>2</sup> 를 초과하는 것
		도체의 주재료	(1) 동인 것 (2) 기타인 것(주재료를 기재할 것)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나. 전자 개폐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전류	(1) 3A 이하인 것 (2) 3A 초과 6A 이하인 것 (3) 6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 20A 이하인 것 (5) 20A 초과 40A 이하인 것 (6) 40A 초과 60A 이하인 것 (7) 60A 초과 100A 이하인 것 (8) 100A 초과하는 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인 것 (4) 3극 초과하는 것
		접점재료	(1) 동, 은 또는 동합금, 은합금인 것 (2) 기타인 것(접점재료를 기재할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00V 이하인 것 (3) 200V 초과 250V 이하인 것 (4) 250V 초과 350V 이하인 것 (5) 350V 초과하는 것
		등급	(1) X1 등급인 것 (2) X2 등급인 것 (3) X3 등급인 것 (4) Y1 등급인 것 (5) Y2 등급인 것 (6) Y3 등급인 것 (7)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용량	(1) 0.1 $\mu$ F 이하인 것 (2) 0.1 $\mu$ F 초과 0.33 $\mu$ F 이하인 것 (3) 0.33 $\mu$ F 초과 1 $\mu$ F 이하인 것 (4) 1 $\mu$ F 초과 3 $\mu$ F 이하인 것 (5) 3 $\mu$ F 초과 5 $\mu$ F 이하인 것 (6) 5 $\mu$ F 초과하는 것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 속품 및 연결 부품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정격전류	(1) 3A 이하인 것 (2) 3A 초과 5A 이하인 것 (3) 5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5) 15A 초과 25A 이하인 것 (6) 25A 초과 35A 이하인 것 (7) 35A 초과하는 것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 이상인 것
		접속기의 전 선 부착여부	(1) 일체형인 것 (2) 분리형인 것
		과부하보호장 치(멀티탭에 한한다)	(1) 있는 것 (2) 없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가. 퓨즈 및 퓨즈홀더  ① 퓨즈 및 퓨즈홀더	구조	(1) 가용체와 고리를 붙인 것 (2) 가용체와 고리를 일체로 성형한 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차단전류	(1) 100A 이하인 것 (2) 100A 초과 300A 이하인 것 (3) 300A 초과 500A 이하인 것 (4) 500A 초과 1,000A 이하인 것 (5) 1,000A 초과 1,500A 이하인 것 (6) 1,500A 초과 2,500A 이하인 것 (7) 2,500A 초과 5,000A 이하인 것 (8) 5,000A 초과 7,000A 이하인 것 (9) 7,000A 초과 10,000A 이하인 것 (10) 10,000A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00mA 이하인 것 (2) 100mA 초과 800mA 이하인 것 (3) 800mA 초과 2.5A 이하인 것 (4) 2.5A 초과 6.3A 이하인 것 (5) 6.3A 초과 10A 이하인 것 (6)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7) 15A 초과 30A 이하인 것 (8) 30A 초과 60A 이하인 것 (9) 60A 초과 100A 이하인 것 (10) 100A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② 온도퓨즈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전류	(1) 5A 이하인 것 (2) 5A 초과 15A 이하인 것 (3) 15A 초과하는 것
		공칭동작온도	(1) 100℃ 이하인 것 (2) 100℃ 초과 120℃ 이하인 것 (3) 120℃ 초과 160℃ 이하인 것 (4) 160℃ 초과 200℃ 이하인 것 (5) 200℃ 초과하는 것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인 것 (4) 3극 초과하는 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차단전류	(1) 1,000A 이하인 것 (2) 1,000A 초과 1,500A 이하인 것 (3) 1,500A 초과 2,500A 이하인 것 (3) 2,500A 초과 5,000A 이하인 것 (4) 5,000A 초과 7,500A 이하인 것 (5) 7,500A 초과 10,000A 이하인 것 (6) 10,000A 초과 15,000A 이하인 것 (7) 15,000A 초과 20,000A 이하인 것 (8) 20,000A 초과 25,000A 이하인 것 (9) 25,000A 초과 30,000A 이하인 것 (10) 30,000A 초과 50,000A 이하인 것 (11) 50,000A 초과 75,000A 이하인 것 (12) 75,000A 초과하는 것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② 배선용 차단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전류	(1) 5A 이하인 것 (2) 5A 초과 15A 이하인 것 (3) 15A 초과하는 것
		공칭동작온도	(1) 100℃ 이하인 것 (2) 100℃ 초과 120℃ 이하인 것 (3) 120℃ 초과 160℃ 이하인 것 (4) 160℃ 초과 200℃ 이하인 것 (5) 200℃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 ② 배선용 차단기	정격전류	(1) 15A 이하인 것 (2) 15A 초과 30A 이하인 것 (3) 30A 초과 50A 이하인 것 (4) 50A 초과 100A 이하인 것 (5) 100A 초과하는 것
		과전류트립 장치	(1) 열동식인 것 (2) 전자식인 것 (3) 기타인 것 (종류를 기재할 것)
	③ 누전 차단기	극수	(1) 2극인 것 (2) 3극인 것 (3) 3극 초과하는 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차단전류	(1) 1,000A 이하인 것 (2) 1,000A 초과 1,500A 이하인 것 (3) 1,500A 초과 2,500A 이하인 것 (4) 2,500A 초과 5,000A 이하인 것 (5) 5,000A 초과 7,500A 이하인 것 (6) 7,500A 초과 10,000A 이하인 것 (7) 10,000A 초과 15,000A 이하인 것 (8) 15,000A 초과 20,000A 이하인 것 (9) 20,000A 초과 25,000A 이하인 것 (10) 25,000A 초과 30,000A 이하인 것 (11) 30,000A 초과 50,000A 이하인 것 (12) 50,000A 초과 75,000A 이하인 것 (13) 75,000A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③ 누전 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 7mA 이하인 것 (2) 7mA 초과 15mA 이하인 것 (3) 15mA 초과 30mA 이하인 것 (4) 30mA 초과 50mA 이하인 것 (5) 50mA 초과 100mA 이하인 것 (6) 100mA 초과하는 것 (7) 기타인 것(다중정격인 것 : 정격감도 전류를 기재할 것)
		누전트립 동작시간	(1) 0.03초 이하인 것 (2) 0.03초 초과 0.1초 이하인 것 (3) 0.1초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5A 이하인 것 (2) 15A 초과 30A 이하인 것 (3) 30A 초과 50A 이하인 것 (4) 50A 초과 100A 이하인 것 (5) 100A 초과하는 것
		과전류트립 장치	(1) 열동식인 것 (2) 전자식인 것 (3) 기타인 것 (종류를 기재할 것)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50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용량	(1) 50VA 이하인 것 (2) 50VA 초과 100VA 이하인 것 (3) 100VA 초과 200VA 이하인 것 (4) 200VA 초과 500VA 이하인 것 (5) 500VA 초과 1kVA 이하인 것 (6) 1kVA 초과 2kVA 이하인 것 (7) 2kVA 초과 4kVA 이하인 것 (8) 4kVA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권선의 절연종류	(1) A종인 것 (2) E종인 것 (3) B종인 것 (4) F종인 것 (5) H종인 것 (6) 기타인 것 (절연종류를 기재할 것)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라. 주방용 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 전동기기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계속)	정격입력 (전기충전기는 제외한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7. 전기기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냉장·냉동기기 하. 전자레인지 거. 가정용 전동재봉기 너. 전기충전기 더. 전기건조기 러. 전열기구 머. 전기마사지기 버. 냉방기 및 제습기 서. 유체펌프 어. 전기가열기기 저. 사우나기기 처. 관상 및 애완용 기기 커. 기포발생기기 터. 전격살충기 퍼. 전기욕조 허. 공기청정기 고. 자동판매기 노. 팬, 레인지 후드 도. 화장실용 전기기 로. 가습기 모. 전기분무기 보. 전기소독기 소. 음식물처리기 오.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조. 그 밖에 가목부터 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2A 이하인 것 (3) 2A 초과 3A 이하인 것 (4) 3A 초과 4A 이하인 것 (5) 4A 초과 5A 이하인 것 (6) 5A 초과 6A 이하인 것 (7) 6A 초과 7A 이하인 것 (8) 7A 초과 8A 이하인 것 (9) 8A 초과 9A 이하인 것 (10)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11) 15A 초과 20A 이하인 것 (12) 20A 초과 25A 이하인 것 (13) 25A 초과 30A 이하인 것 (14) 30A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0I종인 것 (2) 0종인 것 (3) 1종인 것 (4) 2종인 것 (5) 3종인 것
		발열부의 형태	(1) 보빈식인 것 (2) 열판식인 것 (3) 시이즈식인 것 (4) 석영관식인 것 (5) 운모식인 것 (6) 전극식인 것 (7) 리본식인 것 (8) 스페이스식인 것 (9) 기타인 것 (형태를 기재할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8. 전동공구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다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기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100W 이하인 것 (2)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3)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4)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6)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7) 600W 초과 700W 이하인 것 (8) 7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9) 800W 초과 900W 이하인 것 (10) 900W 초과 1.5KW 이하인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2A 이하인 것 (3) 2A 초과 3A 이하인 것 (4) 3A 초과 4A 이하인 것 (5) 4A 초과 5A 이하인 것 (6) 5A 초과 6A 이하인 것 (7) 6A 초과 7A 이하인 것 (8) 7A 초과 8A 이하인 것 (9) 8A 초과 9A 이하인 것 (10) 10A 초과 14A 이하인 것
		방수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복사기 나. 직류전원장치 다. 무정전 전원장치 라. 코팅기 마. 그 밖에 가 목부터 라 목 까 지 의 기기와 유 사한 기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4)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5)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6)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7)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8)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10) 1,000W초과 2,000W이하인 것 (11) 2,000W초과 3,000W이하인 것 (12) 3,000W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정격 전압	(1) 250 V인 것 (2) 500 V인 것 (3) 600 V인 것 (4) 750 V인 것
		정격 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하는 것
		핀(극)의 수	(1) 1 인 것 (2) 1 초과 2 이하인 것 (3) 2 초과 4 이하인 것 (4) 기타인 것
		방수 보호 등급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외곽의 재질	(1) 세라믹인 것 (2) 합성수지인 것 (3) 금속인 것 (4) 기타인 것
		접촉 방식	(1) 나사형인 것 (2) 꽃음형인 것 (3) 삼입형인 것 (4) 맞대기형인 것 (5) 기타인 것
		스위치	(1) 있는 것 (2) 없는 것
		온도	(1) T 표시 있는 것 (2) T 표시 없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	나. 일반조명 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 기구 ③ 백열등기 구·전기 스탠드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 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젠등 기구 ⑥ 고압방전 등기구 ⑦ 투광조명기구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5)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하는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 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②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③ 네온 변압기 ④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용 포함)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5)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인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		사용장소	(1) 내장형(기구내용)인 것 (2) 독립형인 것 (3) 일체형인 것 (4) 기타인 것(장소를 기재할 것)
		램프의 종류	(1)광원의 종류를 기재할 것
	라. 안정기 내장형 램프 (LED용 포함)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정격입력전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30W 이하인 것 (3) 30W 초과 50W 이하인 것 (4)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5)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6) 200W 초과하는 것	
12. 직류전원 장치 또는 전기 충전기에 연결 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주방용 전동기기 나. 전기담요 및 매트 다.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라. 전격살충기	제7호(전기기기)의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안전적용기 준에 따른다.	

[별표 8]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안전적용기준(제33조 관련)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① 온도조절기	정격전류	(1) 3A 이하인 것 (2) 3A 초과 6A 이하인 것 (3) 6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 20A 이하인 것 (5) 20A 초과 40A 이하인 것 (6) 40A 초과 60A 이하인 것 (7) 60A 초과하는 것
	② 온도과승 방지장치		
	③ 써미스터		
	④ 자동압력 스위치		
⑤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방수보호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⑥ 전기구동 모터 기동 릴레이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인 것 (4) 3극 초과하는 것	
⑦ 에너지 레귤레이터	접점재료	(1) 동 또는 동합금인 것 (2) 기타인 것(접점재료를 기재할 것)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없음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50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용량	(1) 50VA 이하인 것 (2) 50VA 초과 100VA 이하인 것 (3) 100VA 초과 200VA 이하인 것 (4) 200VA 초과 500VA 이하인 것 (5) 500VA 초과 1kVA 이하인 것 (6) 1kVA 초과 2kVA 이하인 것 (7) 2kVA 초과 4kVA 이하인 것 (8) 4kVA 초과하는 것
		권선의 절연 종류	(1) A종인 것 (2) E종인 것 (3) B종인 것 (4) F종인 것 (5) H종인 것 (6) 기타인 것 (절연종류를 기재할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 깎기 나. 감자탈피기 다. 전기정미기 라. 전기 빵 자르개 마. 전기용해기 바. 애완동물 목욕기 사. 이미용기기 아. 전기 주류 숙성기 자. 전기시계 차. 적외선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타. 컴프레서 파. 전기온수 매트 하. 구강청결기 거. 전기분수기 너. 투영기 더. 해충퇴치기 러. 전기집진기 며. 착유기 버. 서비스기기 서. 전기에어 커튼 어. 팬코일유닛 저. 폐열 회수 환기 장치 쳐. 게임기구 커. 전동형 롤스크린 터. 전기훈증기 퍼. 수도 동결 방지기 허. 보풀 제거기 (계속)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정격입력 (전기차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에 한함)	(1) 5kVA 이하인 것 (2) 5kVA 초과 10kVA 이하인 것 (3) 10kVA 초과 50kVA 이하인 것 (4) 50kVA 초과 100kVA 이하인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2A 이하인 것 (3) 2A 초과 3A 이하인 것 (4) 3A 초과 4A 이하인 것 (5) 4A 초과 5A 이하인 것 (6) 5A 초과 6A 이하인 것 (7) 6A 초과 7A 이하인 것 (8) 7A 초과 8A 이하인 것



7. 전기기기	고. 산소이온 발생기 노. 전기정수기 도. 전기세척기 로.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 전기작동 도어록 오. 전기헬스기구 조. 전기차충전기 초. 에너지 저장장치		(9) 8A 초과 9A 이하인 것 (10)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11) 15A 초과 20A 이하인 것 (12) 20A 초과 25A 이하인 것 (13) 25A 초과 30A 이하인 것 (14) 30A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0I종인 것 (2) 0종인 것 (3) 1종인 것 (4) 2종인 것 (5) 3종인 것
		발열부의 형태	(1) 보빈식인 것 (2) 열판식인 것 (3) 시이즈식인 것 (4) 석영판식인 것 (5) 운모식인 것 (6) 전극식인 것 (7) 리본식인 것 (8) 스페이스식인 것 (9) 기타인 것 (형태를 기재할 것)
		충전전력 공급방식 (전기차충전기에 한한다)	(1) 교류 충전방식인 것 (2) 직류 충전방식인 것 (3) 기타인 것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 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다. 편집기 라. 디스크 플레이어 마. 앰프 바. 오디오 시스템 사. 전자악기 아. 비디오 게임기구 자. TV 영상 프로젝터 차. 오디오 프로세서 카. 음성 및 영 상분배기 타. 영상전송기 파. 영상 프로세서 하.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100W 이하인 것 (2)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3) 2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4) 4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5)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6)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7) 1,000W 초과 2,000W 이하인 것 (8) 2,000W 초과 3,000W 이하인 것 (9) 3,000W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 다. 프로젝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
	라.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바. 재단기 사. 제본기 아. 실물화상기 자. 입체영상기 차.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에 한함) 카. 팩시밀리기 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파.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4)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5)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6)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7)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8)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10) 1,000W 초과 2,000W이하인 것 (11) 2,000W 초과 3,000W이하인 것 (12) 3,000W 초과하는 것
	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기 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p>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p> <p>너.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p> <p>더. 디지털TV (스마트 TV, IPTV 등)</p> <p>러.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p> <p>머. 원격제어 방송기기</p>		
--	--	--	--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 스타터	정격 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인 것 (3) 기타인 것
		외곽의 재질	(1) 합성수지인 것 (2) 금속인 것 (3) 기타인 것
	나. 백열등 기구 ① 백열등 기구 · 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대리아등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5)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하는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다.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 할라이드 램프 ⑤ 나트륨램프 ⑥ 칼라램프	정격입력전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20W 이하인 것 (3) 20W 초과 30W 이하인 것 (4) 30W 초과 40W 이하인 것 (5) 40W 초과 50W 이하인 것 (6)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7)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8)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9)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10)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11)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12) 600W 초과 700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			(13) 7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14) 800W 초과 900W 이하인 것 (15) 9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라. 기타 조명 기구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①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조명 기구 중 에디 슨 나사형베이 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30W 이하인 것 (3) 30W 초과 50W 이하인 것 (4)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5)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6) 200W 초과하는 것
	② 충전식 휴대전등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하는 것
	③ 투광조명 등기구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④ 할로젠등기구	방수 보호 등급	(1)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램프의 종류	(1) 광원의 종류를 기재할 것
	마. 기타 램프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① 백열전구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② LED모듈 (램프)	정격입력전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20W 이하인 것 (3) 20W 초과 30W 이하인 것 (4) 30W 초과 50W 이하인 것 (5)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6) 100W 초과하는 것
	③ 할로젠전구		

12. 직류전원 장치 또는 전기 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전지	단전지의 활물질을 구성하는 주요물질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양극) (1) 코발트화합물계 (2) 기타계 (음극) (1) 탄소계 (2) 실리콘계 (3) 기타계
		단전지 전류용량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원통형) (1) 2,400 mAh 이하 최대용량 (2) 2,400 mAh 초과 최대용량 (각형/폴리머) (1) 1,500 mAh 이하 최대용량 (2) 1,500 mAh 초과 3,000 mAh 이하 최대용량 (3) 3,000 mAh 초과 5,000 mAh 이하 최대용량 (4) 5,000 mAh 초과 최대용량
		전지 보호회로의 구성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1) 과전류보호장치의 유무 (2) 과전압보호장치의 유무 (3) 고온보호장치의 유무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1) 직/병렬 구조별

[별표 8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안전적용기준(제33조 관련)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7. 전기기기	대상없음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나. 비디오 카메라 다. 튜너 라. 라디오 수신기 마. 리시버 바. 음성기록계 사. 음성 플레이어 아. 위성방송 수신기 자. 비디오폰 차. 음질조절기 카. 신호변환 장치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100W 이하인 것 (2)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3) 2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4) 4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5)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6)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7) 1,000W 초과 2,000W 이하인 것 (8) 2,000W 초과 3,000W 이하인 것 (9) 3,000W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타. 콤프레셔 게이트 파. 전자시계 하. CCTV 카메라 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너. 영상기록계 더. A/V신호 수신기 러. CATV 방송수신기 머. 턴테이블 버. 모듈레이터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전자저울 라. 금전등록기 마. 어학실습기 바. 전자칠판 및 보드 사. 동전계수기 아. 전동타자기 자. 전기소자기 차. 교통카드 충전기 카. 번호표 발행기 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4)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5)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6)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7)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8)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10) 1,000W 초과 2,000W이하인 것 (11) 2,000W 초과 3,000W이하인 것 (12) 3,000W 초과하는 것

	<p>기 포함)</p> <p>파.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p> <p>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용 셋톱박스 등)</p> <p>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p> <p>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p> <p>더. A/D 및 D/A 신호변환기</p>	<p>방수 보호 등급</p> <p>절연등급</p>	<p>(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p> <p>(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p>
--	--	-----------------------------	--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		
11. 조명기구	대상없음		
12. 직류전원 장치 또는 전기 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가. 공기청정기	[별표 7]의 제7호(전기기기)의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 안전적용기준에 따른다.	
	나. 충전용 전동공구	[별표 7]의 제8호(전동공구)의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 안전적용기준에 따른다.	
	다.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별표 8의2]의 제10호(정보·통신·사무기기)의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안전적용기준에 따른다.	
	라.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세부범위(제34조 관련)

구 분	범 위	세부범위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 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다. 광접합소자(포토커플러)	-
	라.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Y 축전기(커패시터)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의 세부범위를 준용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트랜스포머)	-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가. 전동기	-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네틱클러치	-
4. 전기적·열적·기계적·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 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
	나. 회로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

[별표 10]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제12조 관련)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2.원자재검사	2.1 개선명령	(1)인증시공장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질 및 부품“이란, 안전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부품을 말한다.
	2.2 개선명령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원자재검사를 대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공정검사	3.1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및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3 개선명령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4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5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거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제품검사	4.1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4.3 개선명령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4.4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5.제조·검사설비 등	5.1 개선명령	-
	5.2 개선명령	-
	5.3 개선명령	-
	5.4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5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6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7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8 개선명령	(1)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 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6.검사설비의 교정	6.1 개선명령	-
	6.2 지도개선	사용되는 모든 교정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개선명령	-
7.기록의 보존	7.1 개선명령	인증심사 및 인증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증취득 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어 보존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2 개선명령	-
	7.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8.표시사항	8.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2 개선명령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는 인증취소 처분한다. 인증심사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9.인증제품의 변경	9.1 개선명령	-
	9.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부적합품의 관리	10.1 개선명령	-
	10.2 개선명령	-
11.보관 및 관리	11.1 지도개선	-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12.고객불만의 관리 및 안전 교육	12.1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2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3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4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생산공정의 내부감사	13.1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3.2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4.개선조치의 확인	14.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료채취	15.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2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주1) 부적합 판정기준에서 "지도개선"인 항에 대하여는 심사원은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제조자에게 성실히 지도하여 개선토록하며, 본 항들은 16.2항의 공장심사 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주2)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2, 3.4, 3.5, 3.6, 4.1, 4.4, 5.7, 5.8, 7.3은 공장심사시 개선 명령으로 판정된 업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최근 1년 이내 교육 이수 실적에 한함) 지도개선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장심사보고서

공장검사 실시기관명 :

### 1. 일반 사항

1.1 제조업체명 :

소재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공장심사구분 :  인증시공장심사  정기검사

1.4 공장심사개요

인증기관	확인회수	공장관리번호	제품분야	제품명

1.5 심사원 : \_\_\_\_\_ 확인일자: \_\_\_\_\_년 \_\_\_\_월 \_\_\_\_일



## 2. 원자재검사

- 2.1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질 및 부품에 대하여 (예) (아니오)  
는 제조업자가 검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검  
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2.2 공급자의 검사성적서등으로 원자재검사를 대신하는 경 (예) (아니오)  
우 검사성적서에는 제품명, 수량, 발행일이 기록되어  
있고 공급자의 서명이 되어있는가?
- 2.3 부적합품은 명확하게 관리되고 제품에 사용되지 않도 (예) (아니오)  
록 관리되고 있는가?

## 3. 공정검사

- 3.1 품질관리담당자 및 작업자는 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 (예) (아니오)  
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한 작업지침서 또는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최  
신의 것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 3.2 시험기록표에 기록된 공정검사 내용은 운용요령 별표4 (예) (아니오)  
제1호의 공정검사기준을 만족하는가?
- 3.3 공정검사기준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3.4 부적합품은 명확하게 식별되며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 (예) (아니오)  
록 관리되고 있는가?
- 3.5 공정검사 결과를 관리책임자가 확인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3.6 수리된 제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시험 되고 있는 (예) (아니오)  
가?

#### 4. 제품검사

- 4.1 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4.2 제조업자가 실시하는 제품검사 내용은 운용요령 별표4의 2호의 기준을 만족하는가? (예) (아니오)
- 4.3 제품검사기준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4.4 제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품생산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 제조·검사설비 등

- 5.1 당해 안전인증제품을 적합하게 제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2 자체검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3 자체검사를 위한 검사설비는 운용요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4 검사설비의 기능이 정상인가? (예) (아니오)
- 5.5 검사설비의 기능점검주기는 적합한가? (예) (아니오)
- 5.6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점검 절차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7 검사설비를 기능점검 하는 자는 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조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8 검사설비의 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예) (아니오)

## 6. 검사설비의 교정

- 6.1 검사설비는 교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 6.2 검사설비에는 라벨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차기교정일이 표시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 6.3 검사설비의 교정을 공인된 교정기관으로부터 받았는가? (예) (아니오)

## 7. 기록의 보존

- 7.1 자체검사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7.2 원자재 · 공정 · 제품검사기록은 적합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7.3 검사설비의 기능점검 및 교정기록은 적합하게 보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심사원은 기록에 서명하였는가? (예) (아니오)  
“예” 인 경우 어떤 것인지 기입할 것.
- -----

## 8. 표시사항

- 8.1 공장방문 시 안전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예” 인 경우, 제품명, 모델명, 인증번호 등을 기재할 것
- 

- 8.2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등 표시하여 할 사항이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 “아니오” 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되어 있는 표시 라벨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9. 인증제품의 변경

- 9.1 제조업체의 규정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승인 없이 인증제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9.2 제조업자는 인증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변경을 하였는가? (예) (아니오)
- 9.3 인증제품에는 인증서에 기재된 안전관련부품이 사용되는가? (예) (아니오)

## 10. 부적합품의 관리

- 10.1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의 절차서가 있는가?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문서번호를 기입할 것. ....  
※ “아니오”인 경우 절차를 보조페이지에 기록할 것
- 10.2 부적합품 처리절차 및 방법은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11. 보관 및 관리

- 11.1 원자재 및 완제품은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12. 고객 불만의 처리 및 안전교육

- 12.1 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12.2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경우, 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12.3 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2.4 고객 불만 해소 및 안전 교육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최근 1년 이내 최소한 2일 이상 또는 현장교육 1일 이상 받은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 동 항은 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개선명령 및 표시사용금지처분 받은 제조업자에 한한다.

### 13. 생산공정의 내부감사

13.1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3.2 감사내용 : 감사일자 ..... 감사자 .....

### 14. 개선조치의 확인

14.1 제조업자는 전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 개선조치의 실시내용을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 15. 시료채취

※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시료의 세부사항을 “시료채취확인표”에 기록할 것.

15.1 직접 시료를 채취했는가? (예) (아니오)  
※ “아니오” 인 경우, 그 이유와 채취자를 기록할 것.

---

15.2 채취된 시료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아니오” 인 경우 그 이유를 “시료채취확인표”에 기입할 것.

## 16. 공장심사 결과

16.1 본 보고서의 "보조페이지"에 공장심사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사항, 취소사항, 제조업자의 건의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제조업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16.2 심사원은 공장심사 결과를 아래의 해당되는  란에  로 표시할 것.

1. 적 합

2. 부 적 합

가. 개선명령

나. 취 소

### 16.3 첨부

보조페이지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페이지에 번호를 기재할 것

동 보고서에 따른 첨부자료

=====

※ 심사원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사본 1부를 전달한다

※ 공장체제시간 :            시간

일 자 :	일 자 :
심 사 원 :	제 조 업 자 :
서 명 :	서 명 :

## 시 험 기 록 표(공정검사)

제품분류 : \_\_\_\_\_

절연종류 : \_\_\_\_\_

검사항목	검사율 (%)	검사조건	시간	기준치	불합격 표시방법	비고	W
							R
a. 접지연속성		V A	s	ohm 최대			
b. 절연저항		Vd.c	s	Mohm 최소			
c. 누설전류		V		mA 최대			
내 전 압	기초절연	V	s	mA 최대			
	부가절연	V	s	mA 최대			
	이중절연	V	s	mA 최대			
e. 부하시험							
f. 기능시험							
g. 외 관							
h. 표 시							

※ e.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다.

f. 모든 조정부위 및 부품들이 검사과정에서 점검되는지를 확인한다.

W = 심사원이 시험에 입회한 경우, R = 기록으로 확인한 경우





## 시료채취확인표

인증기관	라벨번호	수량	제품명/모델명	인증번호	발취장소	생산시기

※ 발취장소에 기재하는 내용 : P=생산중의 제품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또는 S=재고품,  
 F=제조업자로부터 송달 받음.  
 T=심사원에 의해 인증기관에 전달됨,  
 A=대리인에 의해 수송됨

[별지 제2호서식]

<b>시험성적서</b>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b>발행번호 :</b> 시험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b>시험기관명 :</b> 주소 :
<b>제조사 :</b> 주소 : 대리인 : 주소 :
<b>시험기준 :</b> 시험절차 : 안전기준외의 적용기준 :
<b>시험대상제품명 :</b> 상표 : 모델/형식 : 정격 :
<b>시험결과 :</b> 첨부자료 1. 시험결과 내용 2. 과생모델의 범위 및 제품특기사항 3. 안전관리 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4. 제품사진 5. 표시사항 및 주의 또는 경고문구
<b>시험판정에 대한 약정 부호</b>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N/A(Not Applicable)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P(Pass) 시험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F(Fail)
<b>시험기간</b> 시료 접수일 : 시험 수행기간 :
<b>일반 요구사항</b> 본 시험성적서는 인증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본 시험성적서의 시험 결과는 당해 시험된 모델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b>기타사항</b>

[별지 제3호서식]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료확인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제조사	제 조 국	
	상 호	
제 품 명	모 델 명	
정 격		
수 량		
통관세관명		
사용장소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8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전기용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
-----	--------------------------------------

210mm × 297mm[일반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